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번호 | 2203 |
|------|------|

2017. 11. 29.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10월 31일, 박진형 의원

나.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77회 정례회】

- 제11차 기획경제위원회(2017.11.29)상정,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진형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

2. 주요내용

- 산학연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항 삭제)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윤병국)

가.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의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로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되어 산학연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나.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운영 현황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서울시는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추진함.
 - 협력사업은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과학기술개발의 증진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을 의미함.
- 서울시는 산학연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

등 협력사업의 전반적인 심의·조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서울시의 경제기획관과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표이사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외부전문가들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제20조의 2) 현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붙임자료에 위원회 명단 참조)

다. 종합의견

- 현재 발의 중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에 따르면 미래혁신기술 진흥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혁신성장위원회의 기능에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4조(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시장은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직속으로 서울특별시혁신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과학기술혁신 및 인력육성 등에 관한 사항
3. 미래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4.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지원사업 및 미래혁신기술 공공실증사업의 기획·평가·사업규모 등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5. 산학연 협력체계 및 기반구축 등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기술기반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 관련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래혁신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따라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산학연 정책위원회는 혁신성장위원회에 기능적으로 통합되며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산학연 정책위원회 관련 규정인 제20조 제2항의 삭제가 필요함.
- 혁신성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학연정책위원회와 지식재산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정책적 수요에 대응이라는 점에서 이해될 수 있음.
- 하지만 혁신성장위원회가 서울시장이 공동위원장이고 경제진흥본부장,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큰 규모의 자문기구라는 점에서 산학연정책위원회의 지역적인 기능까지 모두 수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1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진형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203 |
|----------|------|

발의년월일 : 2017년 10월 31일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1명)

찬 성 자 : 김제리, 허기희, 유찬종, 김태수,
성중기, 장인홍, 김구현, 이순자,
김용석(서초), 진두생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안」 발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중 중복 예상되는 조항 삭제

2. 주요골자

- 가. 산학연정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의2항 삭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삭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u>제20조의2(산학연정책위원회의 설치·운영)①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협력사업의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u>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u> <u>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u> <u>4.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u> <u>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u>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u> <p><u>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당연직위원 : 시 창조경제기획관,</u> | <p><u><삭 제></u></p> |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위원 : 서울특별시의회 의
원 및 기업인·언론인·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하는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
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
집한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
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건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
에 소속된 경우

3.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
에 있는 경우

⑦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